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arents and Child Care Staff on the Early Childhood Rights

Seo, Youngmi¹⁾ (Howon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childcare environment based on the future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rights by studying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arents and child care staff about early childhood righ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248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usi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in Jeonbuk, and 262 teachers and directors working in the same day care center. Corresponding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ractice of early childhood rights. The findings showed that all parents and childcare staff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rights, but the level of practice was somewhat lower than the recognition of early childhood rights. This suggests that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rights for implementing early childhood rights and a new understanding based on developmental features must be made and a concrete implementation plan must be presented. In addition, since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is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itutional device capable of monitoring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rights. Ultimately, parents and childcare staff should offer infants opportunities to respect them as unique entities and to deepen and promote their own autonomous decisions and understanding of their interests, hopes and best interests.

Key Words: parents, child care staf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arly childhood rights, childcare environment

1) Corresponding Author: SEO Young-Mi, Howon University, 64 Howondaegil, Impi, Gunsan city, Jeollabuk-do, Korea, 54058 / E-mail: sym@howon.ac.kr

영유아권리에 대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¹⁾

서영미²⁾ (호원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영유아권리에 대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실행에 관한 연구로 영유아권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과 보육환경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북의 J, G, I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총 248명과 같은 소재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 총 26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최미희(2012)의 영유아권리 인식에 대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 인식 및 실행 정도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나 보육교직원 모두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영유아권리의 인식 보다 실행 정도가 다소 낮았다. 이는 영유아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영유아권리의 개념적 이해와 발달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재인식이 요구되고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식과 실행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영유아권리 실행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모나 보육교직원들이 영유아를 대할 때, 고유한 주체로서 영유아를 존중하고, 영유아의 흥미와 소망, 최선의 이익에 대해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부모, 보육교직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유아권리, 보육환경

1) 본 논문은 2019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2) 교신저자: 서영미, (54058)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호원대학교 / E-mail: sym@howon.ac.kr

논문투고: 2019. 6. 13 / 심사일자: 2019. 6. 18 / 게재확정일자: 2019. 6. 22

I. 서론

영유아기는 전 생애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한 성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동안 완전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은 물론, 온전한 사랑과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유아기 자체를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유아기를 기초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삼고 있다. 특히, 글로벌 미래사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인간이 그의 일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개인적 목적과 국가,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상을 육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김민진, 이경화, 2017). 이러한 인재상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가 중요한데, 그 기초를 인간에 대한 권리의 존중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의 인식과 민감성의 적기는 바로 영유아기다. 김세연(2016)은 영유아의 행복감은 낙천적이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지적 활동이 활발해져 자신감과 진취적이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전 생애 연속선상에서 영유아는 권리 실현에 결정적 시기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확대가 필요하고, 영유아권리의 존중과 실행을 위한 영유아기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존중하고 사회적 행위자로서 영유아를 인식하고 권리 행사를 보호·지원해야 한다(황옥경, 2012; 서영미, 2018).

특히, 현대사회에서 아동권리에 있어 영유아기부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아동권리의 재인식과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더불어 가정과 보육현장에서 건전한 양육문화를 위해 영유아를 고유한 인격체로 양육하는 것은 성인의 의무이며, 그들의 진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인식과 함께 영유아권리가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배근, 2002; 최미희, 2010). 이러한 아동권리의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며, 보육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보살피는 공적 사회서비스(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이용주, 2015)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서영미, 2016). 아이들을 고유한 주체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아동은 어리다는 이유와 아동권리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으

로서 협약의 비준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을 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아동 관련 법과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6). 이는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국제법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200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권리존중을 강조하였다(서영숙, 201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서영미, 2016). 즉, 아주 어린 영유아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Davie, 1996; Smith, Tsylor & Gollp, 2000), 연령과 성숙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존재로(김진숙, 2009) 그 존엄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영유아권리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존중이 필요하고 가정과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더욱이 영유아기는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되며 이 시기는 생애주기로 볼 때 성장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그 영향력도 결정적이다(서영미, 2016;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아동권리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재연, 강성희(1997)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소라(1998)의 연구에서는 성인들은 아동권리를 인식함에 있어 보호나 양육적 측면을 자율성과 자기결정권보다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현(2004)은 부모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실제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는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 중요성 인식정도는 이소라(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최미희(2012)는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발달권에 대해서는 유아기에 맞게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상이하게 연구됨에 따라 생애 결정적인 기초 시기인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대한 연구는 생애발달의 연속선상에 따라 의의가 있다. 이유미, 안지혜(2014)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실행정도는 중요성의 인식 정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의 특별 활동, 자율성 및 정보 제공은 인식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아 이들 활동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개선이 시급함을 제언하고 있다. 김정화(2014)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유아권리 인식과 권리존중 실행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유아권리 인식이 높을수록 유아권리존중 실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권리의 제대로 된 이해와 인식에 따른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실행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용주, 2015), 영유아권리는 일상에서의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이유미, 안지혜, 2014)를 맺고 있다. 가정을 떠나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요즘의 보육환경에서는 더욱이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권리 인식과 실행은 매우 중요하다(정혜영, 구은미, 2016).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준중 실행 수준이 높은 것(강인숙, 이희경, 2016)으로 나타나, 보육현장에서 영유아권리 준중 실행을 위해 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김진숙(2009)의 연구에서도 영유아권리준중 보육의 의미를 반성적 사고의 과정과 다양한 재교육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권리 증진을 위한 실제적 방안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현장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권리의 인식과 실행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건강관리와 보호자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법제처, 2019). 그중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가장 오래 같이하고, 영향력이 밀접한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권리를 기반으로 한 보육환경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실행정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6년 4월 1일에서 15일까지 전북 J, G, I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총 248명으로 아버지는 121명, 어머니는 127명이다. 보육교직원은 같은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148명, 원장 114명으로 총 262명이다. 본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배경은 연령대에서 부는 40대가 66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모는 30대가 62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서 부는 대학교 졸업자가 49명(40.5%), 모는 대학교 졸업자가 66명(52.0%)이었고, 가정월수입에서는 301만~400만 원대가 부 43명(35.5%)과 모 36명(28.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보육교직원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의 정부 지원어린이집의 교사 70명(47.3%), 원장 68명(59.6%)이 참여하였고,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정부 미지원어린이집의 교사 78명(52.7%), 원장 46명(40.4%)이 참여하였다. 연령대에서 교사는 30대가 62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에서 교사는 2년~4년이 40명(27.0%),

7년 이상 40명(27.0%)으로 동일한 수치였다. 원장의 근무경력은 7년 이상이 70명(61.4%)이었고, 최종학력에서 교사는 전문대학교 졸업자가 74명(50.0%), 원장은 대학교 졸업자가 66명(52.9%)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이재연, 강성희(1997)의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설문지를 다시 영유아에 맞게 재수정·보완한 최미희(2012)의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아동권리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따라 재배열하였고, 영유아기 발달과 특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다. 아동은 넓게 0에서 18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용어의 정리를 위해 ‘아동’이라고 표현된 문항을 ‘영유아’로 수정하였다. 수정·보완한 문항은 다시 유아교육 전문가를 통해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영유아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영유아권리의 실행 정도’에 대한 Cronbach α 는 각각 부모용, 보육교직원용 모두 .94와 .91로 조사되었다.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분석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분석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부모	보육교직원	
생존권	7	9	영유아의 정신건강 서비스
	8	10	영유아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
	9	11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10	12	영유아의 생활수준 유지
	11	13	재해로부터 영유아의 즉각적 구조
	12	14	영유아의 생명존중권
	13	15	영유아의 경제적 권리
	14	16	영유아의 공부할 장소
보호권	15	17	부모로부터 영유아의 비분리
	16	18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후견인)
	17	19	영유아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18	20	영유아의 차별방지
	19	21	영유아의 전쟁비참가권
	20	22	영유아의 권리보장
	21	23	영유아의 유해한 노동금지
	22	24	영유아의 심리적 보호
	23	25	영유아의 신체적보호

	24	26	영유아의 양육제공 권리
	25	27	영유아의 여가 및 놀이 향유권
	26	28	영유아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27	29	영유아의 능력 및 자질 계발권
발달권	28	30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29	31	영유아의 사회정의 교육권
	30	32	영유아의 종교선택 자유
	31	33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관심과 지도
	32	34	영유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책임 있는 성년기 교육권
	33	35	때가 되어 영유아가 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존중
	34	36	영유아의 교육적 원조 및 제공
	35	37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36	38	영유아의 의사반영
	37	39	영유아의 의사존중 권리
참여권	38	40	영유아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39	41	영유아가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40	42	영유아의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41	43	영유아의 시민적 자유권
	42	44	영유아의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43	45	영유아의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44	46	영유아의 애정표현의 권리
	45	47	영유아의 사생활권
	46	48	영유아의 정보제공권

연구도구의 문항은 일반사항과 영유아권리에 대한 문항으로 일반사항과 관련된 질문은 부모 6문항과 보육교직원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권리에 관한 문항은 40문항으로 하위요소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된다.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대해 피험자 중 부모가 총 46개, 보육교직원이 48개의 반응을 각각 인식과 실행의 하위요소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채점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5점으로 점수화된다. 부모와 보육교직원용 연구도구 구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부모용 연구도구 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Cronbach α)		
		중요성 인식정도	실행 여부 인식정도	
일반사항	1, 2, 3, 4, 5, 6	6		
영역	생존권	7, 8, 9, 10, 11, 12, 13, 14	8(.72)	8(.89)
	보호권	15, 16, 17, 18, 19, 20, 21, 22, 23	9(.78)	9(.87)
	발달권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1(.83)	11(.72)
	참여권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2(.83)	12(.74)
합 계	1 - 46	46(.94)	46(.91)	

〈표 3〉 보육교직원용 연구도구 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Cronbach α)		
		중요성 인식정도	실행 여부 인식정도	
일반사항	1, 2, 3, 4, 5, 6, 7, 8	8		
영역	생존권	9, 10, 11, 12, 13, 14, 15, 16	8(.87)	8(.88)
	보호권	17, 18, 19, 20, 21, 22, 23, 24, 25	9(.83)	9(.81)
	발달권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1(.78)	11(.74)
	참여권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12(.72)	12(.71)
합계	1 - 48	48(.94)	48(.91)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북 J, G, I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부모용 24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부 121부와 모 127부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직원용은 262부를 사용하였고, 교사 148부와 원장 114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 중요성 인식 및 실행 정도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영유아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실행정도 간의 차이를 대응표본 t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22.0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영유아권리의 중요성 인식 및 실행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정도의 차이

부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인식의 전체 평균은 4.61이고, 실행 정도의 전체 평균은 3.98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세부내용에서도 인식이 실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 부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 분석(N=248)

범주	범주	중요성 인식		실행 정도	
		M	SD	M	SD
생존권	영유아의 정신건강 서비스	4.65	.61	3.90	.85
	영유아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	4.84	.46	4.29	.90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4.83	.46	4.14	.85
	영유아의 생활수준 유지	4.76	.57	4.14	.89
	재해로부터 영유아의 즉각적 구조	4.80	.53	3.95	1.02
	영유아의 생명존중권	4.85	.46	4.27	.87
	영유아의 경제적 권리	3.86	1.04	3.45	.87
	영유아의 공부할 장소	4.38	.82	3.80	.88
	전체	4.62	.43	3.99	.66
보호권	부모로부터 영유아의 비분리	4.76	.58	4.26	.86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후견인)	4.69	.59	3.99	.92
	영유아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4.66	.62	3.96	.92
	영유아의 차별방지	4.72	.58	4.08	.93
	영유아의 전쟁비참가권	4.72	.61	4.20	.99
	영유아의 권리보장	4.74	.55	4.07	.90
	영유아의 유해한 노동금지	4.71	.64	4.30	.91
	영유아의 심리적 보호	4.76	.57	4.20	.88
	영유아의 신체적보호	4.80	.50	4.24	.89
	전체	4.72	.46	3.99	.66
발달권	영유아의 양육제공 권리	4.72	.58	4.09	.90
	영유아의 여가 및 놀이 향유권	4.63	.67	4.01	.86
	영유아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4.66	.62	3.96	.88
	영유아의 능력 및 자질 계발권	4.67	.61	3.88	.87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4.59	.64	3.78	.90
	영유아의 사회정의 교육권	4.65	.62	3.99	.91
	영유아의 종교선택 자유	4.34	.95	3.80	.95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관심과 지도	4.61	.65	4.04	.88
	영유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책임 있는 성년기 교육권	4.51	.71	3.89	.93
	때가 되어 영유아가 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존중	4.51	.75	3.90	.95
	영유아의 교육적 원조 및 제공	4.53	.70	3.86	.92
	전체	4.58	.53	3.92	.73
참여권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4.64	.70	4.03	.87
	영유아의 의사반영	4.49	.74	3.77	.79
	영유아의 의사존중 권리	4.50	.74	3.81	.79
	영유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4.59	.73	3.96	.81
	영유아가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4.48	.73	3.85	.88

영유아의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4.51	.73	3.90	.84
영유아의 시민적 자유권	4.47	.77	3.95	.83
영유아의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4.56	.74	3.93	.85
영유아의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4.54	.73	3.81	.87
영유아의 애정표현의 권리	4.57	.74	3.94	.91
영유아의 사생활권	4.41	.79	3.69	.85
영유아의 정보제공권	4.56	.68	3.88	.87
전체	4.52	.60	3.87	.68
영유아권리 전체	4.61	.45	3.98	.64

하위영역 중 생존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62이고, 실행 정도의 평균은 3.9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생명존중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실행에서는 영유아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인식과 실행면에서는 영유아의 경제적권리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영유아의 생명존중의 권리를 높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행도 높은 반면, 영유아의 경제적권리의 인식과 실행은 낮은 것으로 보아 영유아권리 존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보호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72이고, 실행은 3.9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신체적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실행 정도에서는 영유아의 유해한 노동금지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사법문제에서의 처우는 인식과 실행 모두 낮았다. 즉, 부모들은 영유아를 신체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인식은 높지만 실행은 다소 낮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법문제에서의 처우는 인식과 실행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호권에 대해 영유아를 고유한 주체로서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달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58이고, 실행은 3.9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식과 실행에서 모두 영유아의 양육제공 권리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영유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권과 때가 되어 영유아가 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권을 존중해 주는 권리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고, 실행면에서는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기본적인 양육제공에 대한 권리는 인식하고 실행하나, 성년기 교육과 부모로부터의 독립권이 낮은 것을 보아 영유아를 돌봄의 주체, 소유의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52이고, 실행은 3.8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인식과 실행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의 사생활권에 대해서는 인식과 실행 모두 낮게 나타났다. 즉, 영유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영유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영유아권리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 차이(N=248)

하위항목		MSD	t
생존권	중요성 인식	4.62(.43)	16.32***
	실행 정도	3.99(.66)	
보호권	중요성 인식	4.72(.46)	13.37***
	실행 정도	4.14(.74)	
발달권	중요성 인식	4.58(.53)	14.81***
	실행 정도	3.92(.73)	
참여권	중요성 인식	4.52(.60)	16.20***
	실행 정도	3.87(.68)	
중요성 인식 전체		4.61(.45)	17.38***
실행 정도 전체		3.98(.64)	

*** $p < .001$

부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정도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t=16.32$, $p < .001$)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권($t=16.20$, $p < .001$)의 실행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이 실행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실행은 다소 낮게 나타났고 그 중 생존권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참여권에 대한 실행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2.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실행정도의 차이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인식의 전체 평균은 4.62이고, 실행 정도의 전체 평균은 3.82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세부내용에서도 인식이 실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 분석(N=248)

영역	중요성 인식		실행 정도		
	M	SD	M	SD	
생존권	영유아의 정신건강 서비스	4.60	.72	4.02	.90

	영유아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	4.76	.72	4.23	.93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4.82	.44	4.15	.87	
	영유아의 생활수준 유지	4.69	.64	4.21	.89	
	재해로부터 영유아의 즉각적 구조	4.79	.58	3.98	1.01	
	영유아의 생명존중권	4.73	.60	4.19	.89	
	영유아의 경제적 권리	3.89	1.15	3.46	1.10	
	영유아의 공부할 장소	4.29	.80	3.73	.93	
	전체	4.57	.50	4.00	.71	
보호권	부모로부터 영유아의 비분리	4.72	.74	3.89	.92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후견인)	4.76	.61	3.77	.98	
	영유아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4.76	.55	3.76	.84	
	영유아의 차별방지	4.72	.62	3.80	.95	
	영유아의 전쟁비참가권	4.64	.84	4.21	1.00	
	영유아의 권리보장	4.84	.43	4.00	.94	
	영유아의 유해한 노동금지	4.78	.57	4.11	.92	
	영유아의 심리적 보호	4.77	.59	3.94	.95	
	영유아의 신체적보호	4.86	.39	3.97	.97	
	전체	4.76	.54	3.94	.78	
발달권	영유아의 양육제공 권리	4.79	.51	4.02	.93	
	영유아의 여가 및 놀이 향유권	4.70	.69	3.73	.91	
	영유아와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4.67	.68	3.61	.83	
	영유아의 능력 및 자질 계발권	4.72	.57	3.73	.81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4.69	.58	3.68	.86	
	영유아의 사회정의 교육권	4.69	.66	3.68	.96	
	영유아의 종교선택 자유	4.40	.87	3.34	1.08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관심과 지도	4.59	.75	3.82	.88	
	영유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책임 있는 성년기 교육권	4.40	.95	3.56	1.01	
	때가 되어 영유아가 원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존중	4.53	.79	3.76	.88	
	영유아의 교육적 원조 및 제공	4.40	.95	3.51	1.02	
	전체	4.60	.59	3.68	.75	
	참여권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4.67	.67	3.81	.90
		영유아의 의사반영	4.55	.80	3.62	.96
영유아의 의사존중 권리		4.62	.68	3.63	.95	
영유아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4.63	.67	3.84	.89	
영유아가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4.47	.90	3.69	.94	
영유아의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4.53	.78	3.66	.82	
영유아의 시민적 자유권		4.47	.85	3.72	.86	
영유아의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4.61	.74	3.73	.87	
영유아의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4.57	.67	3.60	.92	
영유아의 애정표현의 권리		4.65	.71	3.69	.88	
영유아의 사생활권		4.42	.79	3.72	.92	
영유아의 정보제공권		4.58	.70	3.55	.94	
전체		4.56	.59	3.69	.69	
영유아권리 전체		4.62	.49	3.82	.65	

하위영역 중 생존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57이고, 실행 정도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실행 정도에서는 영유아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제적권리는 인식과 실행면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즉, 보육교직원은 부모들보다 좀 더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권을 높게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었고,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경제적권리는 인식과 실행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호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76이고, 실행은 3.94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신체적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실행 정도에서는 영유아의 전쟁비참가권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식면에서는 영유아의 전쟁비참가권이 낮게 나타났고, 실행면에서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법문제에서의 처우가 낮게 나타났다. 즉, 보육교직원들은 신체적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실행은 다소 낮아,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보호권이 인식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발달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60이고, 실행은 3.6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식과 실행에서 모두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양육제공 권리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영유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책임있는 성년기 교육권과 영유아의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영유아의 종교선택 자유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고, 실행면에서도 영유아의 종교선택 자유, 영유아의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영유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책임 있는 성년기 교육권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보육교직원들은 기본적인 양육제공에 대한 권리는 인식하고 실행하나, 종교선택의 자유에서 영유아를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권에서 인식의 평균은 4.56이고, 실행은 3.6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권에 대해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실행면에서는 영유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의 사생활권에 대해서 인식이 낮았고, 실행면에서는 영유아의 정보제공권이 낮게 나타났다. 즉, 참여권에서는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을 존중하고 실행하는데 높게 나타나,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N=262)

하위항목		MSD	t
생존권	중요성 인식	4.57(.50)	14.91***
	실행 정도	4.00(.71)	
보호권	중요성 인식	4.76(.54)	17.78***
	실행 정도	3.94(.78)	
발달권	중요성 인식	4.60(.59)	20.32***
	실행 정도	3.68(.75)	
참여권	중요성 인식	4.56(.59)	20.84***
	실행 정도	3.69(.69)	
중요성 인식 전체		4.62(.49)	21.48***
실행 정도 전체		3.82(.65)	

*** $p < .001$

영유아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 전체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t=21.48$, $p<.0001$), 그 중 보호권($t=17.78$, $p<.001$)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발달권($t=20.32$, $p<.001$)의 실행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현장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 정도를 알아보고,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영유아권리에 대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검증은 4대 권리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서 부모들의 영유아권리 인식이 실행 정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권리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검증 결과도 4대 권리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실행 정도의 차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에서 보육교직원들의 중요성 인식이 실행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분석내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 인식이 실

행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재연, 강성희(1997)의 연구와 이소라(1998), 최미희(201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부모들은 생존권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참여권에 대한 실행 정도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보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발달권의 실행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행정도에 대한 세부 분석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들은 생존권에서 영유아의 생명존중의 권리를 높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행도 높은 반면, 영유아의 경제적권리나 공부할 장소에 대한 권리는 인식도 낮고 실행도 낮은 것으로 보아 영유아권리 존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보육교직원은 부모들 보다 좀 더 안전과 직결되는 생존권을 높게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었고,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경제적권리는 인식과 실행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들은 보호권에서 영유아를 신체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인식은 높지만 실행은 다소 낮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법문제에서의 처우는 인식과 실행 모두 낮은 것 나타나 영유아의 기본적인 보호권에 대해 영유아를 고유한 주체로서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 또한 신체적보호에 대한 권리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실행은 다소 낮아,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보호권이 인식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발달권에서 부모들은 기본적인 양육제공에 대한 권리는 인식하고 실행하나, 성년기 교육과 부모로부터의 독립권이 낮은 것을 보아 영유아를 고유한 주체로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기본적인 양육제공에 대한 권리는 인식하고 실행하였지만, 종교선택의 자유에서 영유아를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권에서 영유아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영유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들도 참여권에서는 영유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을 존중하고 실행하는데 높게 나타나,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소라(1998)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성인들은 보호나 양육적 측면을 자율성과 자기결정권보다 더 강조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이유미, 안지혜(2014)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도 실행이 인식보다 낮게 나타나고, 그 중 영유아의 자율성, 의사결정, 개별성, 정보 제공 등과 같은 ‘개인생활 존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과 실행 모두 낮게 나타났다라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부모나 보육교직원 모두 영유아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영유아권리의 인식적 측면보다 실행 정도가 다소 낮았다.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

로 강화되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아동권리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실행적인 부분에서는 미비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 성인인 부모나 보육교직원 모두 영유아권리의 인식 보다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결론지어 볼 수 있다. 고유한 주체로서 영유아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권리 존중 보다는 성인의 기준에 의한 객체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육아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이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자녀의 권리 존중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영유아로서 ‘자기 고유의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유아들도 자기의 흥미와 소망,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황옥경, 2012; 서영미, 2018). 또한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고,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는 부모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직원들 모두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존중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허용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유아를 이해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영유아가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또는 성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권리 존중의 실행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유아기에 대한 발달특성과 심리 등의 이해가 필요하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영유아기 권리를 강조한 바, 아이 마다의 고유한 기질과 특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존중, 욕구 충족의 기회, 사회적·물리적 환경 등을 영유아의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원칙을 두고 영유아권리 존중의 실행을 이루어야 한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서영미, 2018).

또한, 영유아권리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주체로서 영유아를 존중해주는 영유아권리의 인식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서영미, 2018).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도 영유아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안내와 지침이 요구된다. 이는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고유한 주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개별적 요구를 존중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용주(2015), 이유미, 안지혜(2014)의 선행연구에 따라 보육관련 기관에서의 일상적 양육에 따른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김진숙(2009), 강인숙, 이희경(2016)과 같이 원장보다도 교사 중심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영유아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요구된다. 즉, 영유아의 권리 존중의 실행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이해관계자 즉, 부모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적 범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한 연구로 영유아권리의 인식과 실행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집단 인터뷰 등의 질적인 연구방향을 제언하다.

참고문헌

- 강인숙, 이희경(2016).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발달이 영유아 권리준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교육연구**, 20(4), 49-66.
- 김민진, 이경화(2017). 유아교사의 글로벌리더 미래역량에 대한 인식. **Global Creative Leader**, 7(3), 25-43.
- 김세연(2016).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6(3), 67-81.
- 김정화(2014).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준중 실행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343-364.
- 김진숙(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준중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법제처(2019). **영유아보육법**. <http://www.moleg.go.kr> (2019년 6월 1일 검색).
- 보건복지부(2015).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세종: 보건복지부.
- 서영미(2016). **영유아권리에 기초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서영미(2018).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8(2), 21-49.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 서영숙(2010). **아동권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3), 13-37.
- 신지현(200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6).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에서 2016년 9월 1일 인출.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배근(200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35-46.
- 이소라(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부모·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유미, 안지혜(2014).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3), 239-259.
- 이용주(2015).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 보수와 승진에 대한 인식이 어린이집 교사의 정신 건강과 영유아권리준중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253-250.
- 이재연, 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권리**, 1(1), 65-83.
- 정혜영, 구은미(2016). 보육교사의 영유아권리준중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아동과 권리**, 20(2), 199-221.

- 최미희(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황옥경(2012).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 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16(1), 27-49.
- Davie, R. (1996). Partnership with children: The advancing trend. In R. Daie, G. Upton, & V. Varma (Eds.). *The voice of the child: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pp. 1-11). London: The Falmer Press.
- Smith, A. B., Tsylor, N. J., & Gollp, M. (Eds.) (2000). Children's voi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 Rights*, 10, 73-88.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